



보건복지부

보건복지부



수신자 수신자 참조
(경유)
제목 질의 회신

2. 위 호와 관련하여, 귀 기관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회신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, 답변 내용은 타 요양기관에도 충분히 안내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○ 질의 내용

-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 목적의 내시경 검사 중 폴립 등이 발견되어 결장경하 폴립제거술 등 시술을 실시한 경우, 내시경 세척·소독료 수가 별도 산정 가능 여부

○ 답변

-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은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[별표2]에 따른 비급여 대상이며, 내시경 세척·소독료는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의 일환으로 수반되는 비용이므로 요양급여비용으로 별도 청구할 수 없음

* 다만,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 중 폴립 등이 발견되어 시술을 실시한 경우, 해당 처치, 수술료 및 이에 수반되는 검사료 등에 대해서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있음(보험급여과-770호, 2008.5.22.)

끝.

보건복지부장관



수신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,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

주무관 송서현 보건사무관 조영대 보험급여과장 전결 10/25 정성훈

협조자

시행 보험급여과-5238 2022. 10. 25. 접수
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(어진동) 보건복지부 / shsong98@korea.kr
전화 044-202-2737 전송 044-202-3934 / shsong98@korea.kr / 공개
위험할 땐 119, 힘겨울 땐 129